

#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가. 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 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수정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66조 (안 제1조, 제4조, 제7조)
  - 도로법시행령 제28조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안 제2조)
- 나.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시설 신설 (안 제 3조)
-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 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다.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세부적·구체적 변경

- 주택의 점용료 감면기준 구체화 (주택법에 따른 주택)

라.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신설 (안 제6조제6항, 제6조제7항)

-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 관련 편의시설

마. 점용료 산정기준표(별표 1)의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2. 27. ~ 2015.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행정규제 저촉사항 없음 [기획감사실-3180(2015.3.23.)]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1851(2015.2.13.)]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주민생활지원과-4920(2015.1.22.)]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1]

##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66조제1항”으로,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8조제5항”을 “제55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제4조 중 “제41조제3항”을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중 “10퍼센트 이상”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점용이”를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도로법 제41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허가”를 “도로점용허가”로, “매년도 개시”를 “매 회계연도 시작”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를 “도로점용변경허가를 받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진, 모래함, 체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자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50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도·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p> <p>제3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p>	<p>제1조(목적) -----            ---제66조제1항-----            -----제19조제1항-----            -----            -----            -----            -----            -----.</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            -----            -----제55조-----            -----            -----            -----            -----            -----            -----            -----.</p> <p>제3조(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p>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

지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  
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  
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  
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  
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  
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  
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  
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제3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⑤ (생략)

<신 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제66조제4항-----  
-----  
-----  
-----.

제5조(점용료의 조정) -----  
-----  
-----  
-----100분의 10이  
상-----  
-----  
-----.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경우-----  
-----  
--.

⑤ (현행과 같음)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1. (생략)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 ④ (생략)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  
-----  
-----  
-----  
-----.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도로점용변경허가를 받아-----  
-----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첨 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연락처	(033) 330-2406

## [별첨 2]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